

『구미디지털전자정보기술단지설립및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5년 6월 29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5년 7월 1일

라. 상정일자 : 2015년 7월 8일

제197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

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경제통상국장 황 종 철

나. 제안이유

- 현행 구미디지털전자정보기술단지를 법인 정관의 명칭과 일치시켜 구미전자정보기술원으로 변경하고, 명칭 변경으로 인한 각종별 문맥을 일치시키고,
- 자치법규 규제개선 사항인 해산 시 재산귀속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여 재단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구미디지털전자정보기술단지를 구미전자정보기술원으로 법인명칭 변경(제명, 안 제1조, 제2조)

- 해산 시 잔여재산은 재단의 정관에 따르도록 변경(안 제12조)
-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 법규에 따름 준용(안 제13조)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,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, 「민법」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최 명 호

- 본 「구미디지털전자정보기술단지설립및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은,
 - 현행 법인 정관에 명시된 구미디지털전자정보기술단지 명칭을 구미디지털전자정보기술단지 법인 정관의 명칭과 일치시켜 구미전자정보 기술원으로 법인 명칭을 변경하고,
 - 명칭 변경으로 인한 조례의 각 조별 문맥 정비 및 자치법규 규제 개선 사항인 구미전자정보기술원 해산 시,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사항을 정비, 재단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 기타 준용규정을 신설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